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450 발의연월일: 2024. 9. 30.

발 의 자: 송재봉ㆍ이기헌ㆍ김우영

이병진 · 강득구 · 권칠승

이수진 • 이광희 • 김남희

임호선 · 서미화 · 오세희

박홍배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항에서 발생하는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현행법령 체계는 민간공항에서 발생한 소음피해 보상은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민·군겸용공항에서 발생한 소음피해 보상의 경우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민·군겸용공항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은 군용항공기와 민간항공기 소음에 함께 시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군겸용공항에서발생한 소음피해의 경우 군용항공기로 인한 소음피해에 대해서만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 민간항공기로 인한 소음피해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더욱이 향후 여객수요 증가로 민·군겸용공항에서 민간항공기로 인한 소음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민간항공기

로 인한 소음피해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 공항에 관한 정의 규정에서 단서규정을 삭제하면서 공항의 범위에 민·군겸용공항을 추가함으로써 민·군겸용공항에서 발생하는 민간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보상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안 제2조제4호 단서 삭제 등).

법률 제 호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본문 중 "공항을"을 "공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항공작전기지를 겸하는 공항을 포함한다)을"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공항"이란 「공항시설법」	4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과			
공항개발사업시행자가 새로			
이 건설하는 <u>공항을</u> 말한다.	<u>공항(「군사기</u>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	<u>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u>		
설 보호법」 제2조제4호가목	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	의 규정에 따른 항공작전기		
른 항공작전기지를 겸하는	지를 겸하는 공항을 포함한		
공항은 제외하되, 부산광역시	<u>다)을 <단서 삭</u>		
<u>강</u> 서구에 있는 공항은 포함	<u>제></u>		
<u>한다.</u>			
5. ~ 9. (생 략)	5. ~ 9. (현행과 같음)		